

의안번호	제393호
의결연월일	2017. 9. 4.

-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8. 25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17. 8. 28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9. 4.

제233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농정유통과장 윤기성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(2014. 10. 1.~ 2017. 9. 30.)되어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,
-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,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 등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예

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
- 대상기간

기관명	주소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당초 위탁기간
예산농산물유통센터	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	민간위탁	2008. 10. 01.	2014. 10. 1. ~ 2017. 9. 30.

- 위탁기간 : 2017. 10. 01. ~ 2020. 9. 30. (3년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-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,
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